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에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수리 기준을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계열회사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

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를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3”으로 한다.

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호	5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종전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변경허가·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변경허가 등) <신 설>	제15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신 설>

(생 략)

<신 설>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

<u><신 설></u>	<u>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u> <u>3.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u> <u>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541